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5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5.

발 의 자 : 김병주 · 허성무 · 황명선
김태선 · 채현일 · 박희승
박지혜 · 정을호 · 윤후덕
윤준병 · 이언주 · 한준호
조정식 · 박 정 · 박찬대
양문석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(이하 “군유휴지등”이라 함)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,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문제를 겪고 있음.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,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

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 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705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의12(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의12 군유휴지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

제121조의36(군유휴지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①

「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에 따른 군유휴지등(이하 “군유휴지등”이라 한다)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(이하 이 조에서 “감면대상사업”이라 한다)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)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

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(이하 이 조에서 “감면한도”라 한다)로 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

2.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(이하 이 조에서 “감면대상사업장”이라 한다)의 상시근로자 수 $\times$ 1천5백만원[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(이하 이 조에서 “서비스업”이라 한다)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]

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.

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,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.

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1.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. 다만, 법인의 합병·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

2. 감면대상사업장을 군유휴지등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
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.

제121조의37(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) ① 수도권(인구감소지역, 군유휴지등 및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서 3년(중

소기업은 2년)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균유휴지등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(이하 이 조에서 “종전사업용부동산”이라 한다)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양도차익상당액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.

1. 법인: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.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균유휴지등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(이하 이 조에서 “신규사업용부동산”이라 한다)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
2. 거주자: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.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이 적용되는 균유휴지등으로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
2.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

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

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.

1.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
2. 제2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균유휴지등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, 사업 폐지 등에 관한 판단기준,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7조제4항 본문 중 “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”을 “제121조의22제2항,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21조의33제2항”을 “제121조의33제2항, 제121조의36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28조제2항 중 “제121조의33제2항”을 “제121조의33제2항, 제121조의36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21조의33제2항”을 “제121조

의33제2항, 제121조의36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121조의33제2항”을 “제121조의33제2항, 제121조의36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·가목·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“제121조의33”을 각각 “제121조의33, 제121조의36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군유휴지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군유휴지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21조의3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장의12 군유희지등 지원을 위</u> <u>한 조세특례</u>
<u><신 설></u>	<u>제121조의36(군유희지등의 창업</u> <u>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</u> <u>감면) ① 「군유희지 및 군유희</u> <u>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</u> <u>관한 특별법」 제3조에 따른</u> <u>군유희지등(이하 “군유희지등”</u> <u>이라 한다)에 2029년 12월 31</u> <u>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</u> <u>로 정하는 업종(이하 이 조에</u> <u>서 “감면대상사업”이라 한다)으</u> <u>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</u> <u>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</u> <u>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에 대해</u> <u>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</u> <u>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</u> <u>면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</u> <u>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</u> <u>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</u> <u>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</u> <u>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</u>

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)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(이하 이 조에서 “감면한도”라 한다)로 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

2.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(이하 이 조에서 “감면대상사업장”이라 한다)의 상시근로자 수 × 1천5백만원[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

비스업(이하 이 조에서 “서비스업”이라 한다)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]

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.

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, 상시근로자의 수

의 계산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.

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1.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. 다만, 법인의 합병·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

2. 감면대상사업장을 군유휴지 등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
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
<신 설>

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
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
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
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
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.

제121조의37(군유휴지등으로 이
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)

① 수도권(인구감소지역, 군유
휴지등 및 「접경지역 지원 특
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
경지역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
에서 같다)에서 3년(중소기업은
2년)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
내국인이 군유휴지등으로 이전
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
동산(이하 이 조에서 “종전사
업용부동산”이라 한다)을 2029
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
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
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
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양도차
익상당액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
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

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.

1. 법인: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.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균유휴지등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(이하 이 조에서 “신규사업용부동산”이라 한다)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

2. 거주자: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.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신규사업용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이 적용되는 균유휴지 등으로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

2.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

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.

1.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

2. 제2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균유휴지등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

[illegible]

⑤

1조의20제2항, 제121조의21제2항, 제121조의22제2항, 제121조의33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.

⑥ ~ ⑪ (생략)

제128조(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
배제) ① (생략)

② 「소득세법」 제80조제1항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, 제7조, 제12조제1항·제3항, 제12조의2, 제31조제4항·제5항, 제32조제4항, 제62조제4항, 제63조제1항, 제63조의2제1항, 제64조,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, 제85조의6제1항·제2항, 제96조, 제96조의2, 제96조의3, 제99조의9제2항, 제99조의11제1항, 제99조의12, 제10

-----제121조
의33제2항, 제121조의36제2항-----

⑥ ~ ⑪ (현행과 같음)

제128조(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
배제) ①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-----제121조의33제

2항, 제121조의36제2항-----

-----.

③

-----제 121조의 33제 2항,
제 121조의 36제 2항-----
-----.

[illegible]

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략)

제132조(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
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)

① 내국법인(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)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「법인세법」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(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,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·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,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)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32조(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
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)

①

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 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(이하 이 조에서 “과세표준”이라 한다)에 100분의 17[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,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(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)]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(이하 “법인세 최저한세액”이라 한다)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.

1. ~ 3. (생략)
4. 제6조, 제7조, 제12조제1항.

[illegible]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_____

제3항, 제12조의2, 제21조, 제31조제4항·제5항, 제32조제4항, 제62조제4항, 제63조, 제64조, 제68조, 제96조, 제96조의2, 제99조의9, 제102조, 제121조의8, 제121조의9, 제121조의17,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,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.

가.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, 제12조의2, 제99조의9, 제121조의8, 제121조의9, 제121조의17,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, 제121조의33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

나. ~ 라. (생략)

② 거주자의 사업소득(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

-----제121조의33,
제121조의36-----

가. -----

-----제121조
의33, 제121조의36-----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(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)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(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)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(이하 “소득세 최저한세액”이라 한다)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제6조, 제7조, 제12조제1항 · 제3항, 제12조의2, 제21조, 제31조제4항 · 제5항, 제32조제4항, 제63조, 제64조, 제96조, 제96조의2, 제99조의9, 제102조, 제121조의8, 제121조의9,

[illegible]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제121조의17,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, <u>제121조의33</u> 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.	----- ----- <u>제121조</u> ----- <u>의33, 제121조의36</u> ----- ----- -----.
가.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, 제12조의2, 제99조의9, 제121조의8, 제121조의9, 제121조의17,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, <u>제121조의33</u> 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	가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21조</u> ----- <u>의33, 제121조의36</u> ----- ----- -----
나.·다. (생략)	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